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73호 2022. 6. 22.(수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517호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83호 하동군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5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2-115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7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22-898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일 반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2-874호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2

회 담									
--------	--	--	--	--	--	--	--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22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517 호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하동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하동군수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 제2항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 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역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한다.

2022년 6월 22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훈령 제 383 호

하동군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하동군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과장, 재정관리과장”을 “관광진흥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고객만족담당주사로”를 “기록물관리 업무담당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①·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u>행정과장, 재정관리과장</u>이 되며 위촉 위원은 역사학·행정학·문헌정보학·기록관리학 등 관련전공자 또는 공무원 퇴직자 중 기록물평가와 관련하여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p> <p>④·⑤ (생략)</p>	<p>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관광진흥과장, 도시건축과장-- -----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심의회 운영) ①~④ (생략)</p> <p>⑤ 심의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심의회 간사는 <u>고객만족담당주사로</u> 한다.</p> <p>⑥·⑦ (생략)</p>	<p>제16조(심의회 운영) 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 ----- 기록 물관리 업무담당으로--.</p> <p>⑥·⑦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고시 제2022-115호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15.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585-1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7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길 163-37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6.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이동사유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585-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길 45-55	-	20220615	20080402	마을앞 뚝뒀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격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93-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큰삼내길 22-44	-	20220615	20080402	큰삼내라는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606-4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1길 24-11	-	20220615	20070618	매화꽃이 흐르는 계곡에서 유래된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913-7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813-33	-	20220615	20140701	옛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42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신기동길 3-47	-	20220615	20080402	자연마을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리 850-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내촌길 49-27	-	20220615	20080402	내촌이라는 자연마을이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65-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내회신길 33	-	20220615	20080402	양지마을 옆 회신교에서 계곡을 따라 깊숙히 들어간 곳에 위치한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337-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018-9	-	20220615	20090302	황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도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69-1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769	-	20220615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69-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771	-	20220615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82-2, 257-3, 257-4, 28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33-25	-	20220615	20070618	화심이라는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366-4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471-15	-	20220615	2007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990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곤북로 1110-1	-	20220615	20090702	사천시의 곤명면과 하동군의 북천면의 첫자를 혼용하여 곤북로 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169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길 120-11	-	20220615	20070618	신대리 윗쪽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363-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소송양달길 88	-	20220615	20080402	소송의 양달편 위아래에 있는 마을로 옛지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산78-1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34-29	-	20220615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수곡면) 활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 438-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135	-	20220615	20070618	신흥이라는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길 163-3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길 163-31		20220615	-	20070618	고이라는 법정리명을 반영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길 163-3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길 163-37		20110729	-	20070618	고이라는 법정리명을 반영

하동군 공고 제2022-898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국내·외 투자기업의 조기 분양 완료 및 기반 조성을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 가. 인센티브 중복지원 금지 사항 삭제 (안 제24조)
 - 나. 부칙에 적용례 신설 (안 부칙)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하동군(참조 : 투자유치단, 전화 880-7113, FAX 880-7119, e-mail smreo2ne@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군수는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유망하고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또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투자지원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p> <p>① 군수는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유망하고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또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제21조 및 제22조의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p>	<p>제24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p> <p>군수는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유망하고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또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p>

하동군 공고 제2022-874호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4일

하 동 군 수

1. 지침명 :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2. 제안 이유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26조, 제27조 등
 -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의2 등
3. 주요 내용
 - 가. 공익신고 접수절차 및 조사결과 통보절차 개선(안 제13조, 제19조)
 - 나. 공익신고자에서 법인 제외(안 제14조)
 - 다. 이첩·송부사건의 조사·수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안 제19조)
 - 라.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정비(안 제22조)
 - 마. 징계나 행정처분권자의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안 제27조, 제28조)
 - 바. 보상금·포상 지급사유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안 제30조, 제31조)
 - 사.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32조)
 - 아.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4. 의견 제출 : 이 지침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880-2035, FAX 880-2019, e-mail cherishyou@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별지서식】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지 침 명 :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지침)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규정 제 호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접수증을”을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정하여 1차에 한하여”를 “정하여”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연장”을 “1회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안내문을”을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을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않거나 종결한 경우”를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로,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종결한 사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1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군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제출하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군수는”을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는 소속직원이”를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에게”를 “공익신고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제26조 중 “공익신고자로”를 “공익신고자등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징계를”을 “이를”로 하고, 기존의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

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제1항 중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경우”를 “경우 이를”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처분”을 “판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서식을 다음의 별지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1]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별첨가능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 하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p>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p> <p>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p>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하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서식 6]

20 년 월 일 접수
20 공익 제 호

접수자	공익신고 책임관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공익신고책임관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20 . . . 까지)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서식 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제19조제2항 관련)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호·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9]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하 동 군 수 귀 하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10]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	------	------	-----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내부 공익신고자		[] 외부 공익신고자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	--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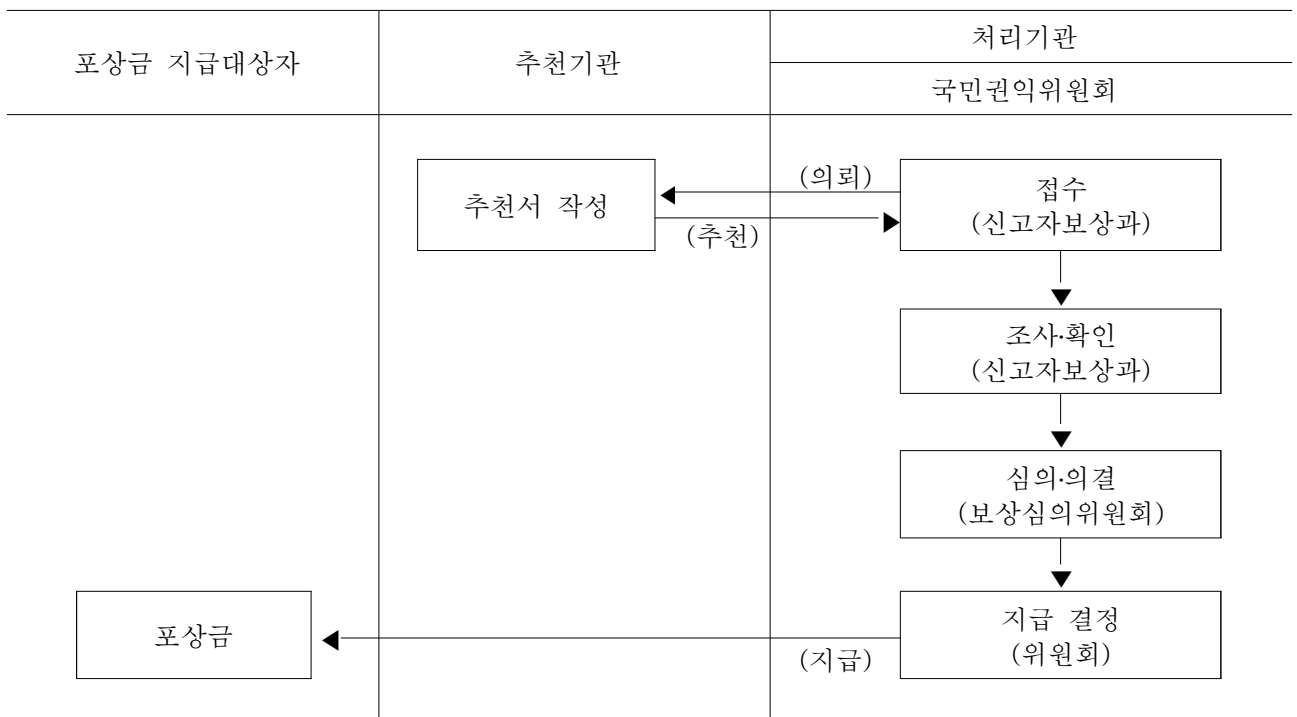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식 11]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시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범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u>접수증</u>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 ----- ----- ----- <u>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 사항 안내를</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대표자 선정 등) ① (생략)</p> <p>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p> <p>1. (생략)</p> <p>2. <u>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u></p> <p>3.·4. (생략)</p>	<p>제14조(대표자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현행과 같음)</p> <p><삭제></p> <p>3.·4. (현행과 같음)</p>
<p>제16조(보완의 요구) ① (생략)</p> <p>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u>정하여 1차에 한하여</u> 다시 보완을</p>	<p>제16조(보완의 요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정하여</u> ----- -----</p>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생략)

②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 5. (생략)

⑤ ~ ⑦ (생략)

⑧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회 연장 -----
-----.

③ -----

----- 안내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

④ ----- 사
건 -----

-----.

1.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제
7항 -----

청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 8.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1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

-----.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
----- 어느 하나에 -----

-----.

1. ~ 8. (현행과 같음)

② -----
-----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 종
결한 사실-----
-----.

제22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군에 이첩·송부
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
구든지 ----- 공익신고자
등-----.

② 누구든지 -----
----- 공익신고자등
에게 -----
-----.

③ -----
----- 공익신고자등

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6조(신변보호 안내) 군수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군수는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직자가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

-----.

제26조(신변보호 안내) -----

----- 공익신고자등으로 -----

-----.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

----- 이를 -----
-----.

②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

----- 공익신고자등 -----
----- 경우 이를 -----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

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 8. (생략)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 6. (생략)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

-----.

1.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2. ~ 8. (현행과 같음)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
판결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

-----.

1 -----.

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생략)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군수는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 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생략)

② (생략)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군수는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 5. (생략)

----- 3년 -----

2. (현행과 같음)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
-----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

-----.

1. ~ 3. (현행과 같음)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

-----.

1. · 2. (현행과 같음)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4. · 5. (현행과 같음)